

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조상호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37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9년 1월 31일

발 의 자 : 조상호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인호, 이승미, 전병주, 박순규,
장상기, 김제리, 이병도, 여 명,
권순선, 김수규, 채유미, 최 선
의원(12명)

1. 제안 이유

- 현행 조례상 교직원 등의 금품 수수 등의 행위에 따른 공익 제보 시의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1억원 이내에서 2억원 이내로 하고, 포상금 지급시 금품·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라는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포상금 지급액의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공익신고의 적극적인 유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가. 지급기준별 포상금액의 포상금액 중 금품·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라는 제한규정을 삭제하고, 포상금액 중 1억원을 2억원으로 확대함(안 별표)

3. 참고 사항

- 가. 관계 법령 :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 조치 : 해당 없음 (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보유형(지급대상)에서 교직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의 포상금액을 “금품·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(지급한도액 1억원)” 에서 “2억원 이내” 로 하고, 제보유형(지급대상)에서 그 밖에 시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행위 중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제보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의 포상금액을 “1억원 이내” 에서 “2억원 이내” 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의 공익제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 다만, 포상금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
<p>【별표】</p> <p>포상금 산정기준(제15조 관련)</p> <p>1. 지급기준별 포상 금액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72 741 775 1178"> <thead> <tr> <th>제보유형(지급대상)</th> <th colspan="2">포상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교직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</td> <td colspan="2">금품·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(지급한도액 1억원)</td> </tr> <tr> <td>그 밖에 시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행위</td> <td>·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제보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</td> <td>1억원 이내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제보유형(지급대상)	포상금액		교직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	금품·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(지급한도액 1억원)		그 밖에 시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행위	·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제보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	1억원 이내	<p>【별표】</p> <p>포상금 산정기준(제15조 관련)</p> <p>1. 지급기준별 포상 금액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807 741 1410 1178"> <thead> <tr> <th>제보유형(지급대상)</th> <th colspan="2">포상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교직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</td> <td colspan="2">2억원 이내</td> </tr> <tr> <td>그 밖에 시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행위</td> <td>·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제보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</td> <td>2억원 이내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제보유형(지급대상)	포상금액		교직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	2억원 이내		그 밖에 시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행위	·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제보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	2억원 이내
제보유형(지급대상)	포상금액																		
교직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	금품·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(지급한도액 1억원)																		
그 밖에 시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행위	·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제보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	1억원 이내																	
제보유형(지급대상)	포상금액																		
교직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	2억원 이내																		
그 밖에 시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행위	·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제보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	2억원 이내																	

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제보유형(지급대상)에서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의 포상금액을 “금품·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(지급한도액 1억원)” 에서 “2억원 이내” 로 하고, 제보유형(지급대상)에서 그 밖에 시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행위 중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제보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의 포상금액을 “1억원 이내” 에서 “2억원 이내” 로 확대함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
-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현행 본 조례를 근거로 서울시특별시교육청은 ‘공익제보포상금제운영’ 사업을 기 추진하고 있음(붙임1 첨부자료: 2019년 예산액 9천만원)
- 조례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 규모의 확대에 인하여 향후 공익제보 신고가 늘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그 건수나 제보유형, 평균 보상금 지급액의 추계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상황임(2010~2018.6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건수 제보유형 및 지급액을 붙임2로 첨부함)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정책조사팀장 여차민

예산분석관 원동아

☎ 02-2180-7954

e-mail : dongya1@seoul.go.kr

붙임1 개정조례안 관련 서울시교육청 기추진 내역

조례	2019 예산 (단위:천원)	비 고
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	9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사업명 : 공익제보포상금제운영 • 사업목적 : 교육청 창립도 향상에 공적이 있는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및 보상금(구조금 포함)을 지급하여 부조리행위 근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대상: 교육청 창립도 향상에 공적이 있는 공익제보자 -내용: 공익제보위원회를 통해 포상금 및 보상금(구조금 포함) 지급대상 및 금액 등을 결정하여 지급(연 2회 이상) -소요예산: 90,000천원

붙임2

2010 ~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실적

□ 공익신고 접수 기간 : '10. 2. 1. ~ '18. 6. 30.

□ 2010 ~ 2018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내역

연번	년도	접수 기간	지급 건수	보상금 지급액	비고
1	2010	2010. 2. 1. ~ 2010. 10. 31.	6	1,550만원	포상금
2	2011	2010. 11. 1. ~ 2011. 6. 30.	9	2,150만원	"
3	2012	2012. 1. 1. ~ 2012. 6. 30.	3	550만원	"
4	2013	2012. 7. 1. ~ 2012. 12. 31.	1	500만원	
5	2014	2013. 7. 1. ~ 2013. 12. 31.	1	1,000만원	"
6	2015	2014. 1. 1. ~ 2014. 12. 31.	1	180만원	"
7	2016	2016. 1. 1. ~ 2016. 6. 30.	2	250만원	"
8	2017	2016. 7. 1. ~ 2017. 6. 30.	7	5,200만원	"
9	2018	2017. 6. 30. 이전 접수 기간	4	1,000만원	"
합계			34	12,380만원	

※ ①각 연도의 지급건수는 당해년도 공익신고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그 해에 보상금 지급이 결정 난 건수임

②공익신고가 접수되어도 해당 건에 대한 재판진행, 사건처리 기간 등으로 보상금 지급 결정이 나오기 까지 평균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은 바, 접수기간이 각 연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

2010년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실적

- 공익신고 접수 기간 : '10. 2. 1. ~ '10. 10. 31.
- 공익신고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개최 : '10. 12. 13.(월)
- 2010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내역

연번	건 명	주요 지적사항	보상금 지급액	비고
1	○○교 영어전용교실 설치공사 비리	o 무면허인 특정업체에게 영어전용교실 공사 발주 특혜	300만원	
2	○○교 전임교장 회계부정	o 개인 경조사비 257만원 부당 지출	200만원	
3	○○교 교장 전근대적 학교운영	o 어린이신문 구독 관련 부적정 o 교직원 식대를 학부모가 부담	250만원	
4	○○교 시설공사 부적정	o 무면허 업체와 교실 창호공사를 계약하고 공사비를 과다 집행	250만원	
5	○○교 교장 관련 진정	o 학교발전기금을 통한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음 o 결혼 청첩장을 학부모단체 임원들에게 통지하고 축의금 수수	300만원	
6	○○교 교사 촌지 수수	o 교원이 30만원 상품권을 수수	250만원	
합계			1,550만원	

2011년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실적

- 공익신고 접수 기간 : '10. 11. 1. ~ '11. 6. 30.
- 공익신고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개최 : '11. 8. 25.(목)
- 2011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내역

연번	건 명	주요 지적사항	보상금 지급액	비고
1	○○교 골프부 유니폼 대금 횡령	o 골프부 유니폼 대금 업무상 횡령(유용)	100만원	
2	○○교 도서관 회비 징수	o 불법찬조금 모금 및 수수	400만원	
3	○○교 교사 임용시험	o 교원채용관리 부적정 o 신규교원 채용 문제유출	500만원	
4	○○교 학생회 임원 선출 불공정, 불법찬조금 모금	o 학생포상 절차 및 관리 부적정 o 학부모회 불법찬조금 조성에 가담(해당교 교원)	200만원	
5	○○교 불법찬조금 모금	o 불법찬조금 모금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o 학교발전기금 관리 부적정	200만원	
6	○○교 교사 채용비리	o 교원 신규임용 업무 처리 부적정	150만원	
7	○○교 교장의 부정적인 학교경영	o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관리 부적정 o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(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)	300만원	
8	○○교 불법찬조금 모금	o 불법찬조금 모금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	100만원	
9	○○교 야구부 감독의 비위	o 운동부 후원금 조성 및 집행 부적정 o 운동부 코치 인건비 추가 지급 및 부당 운영	200만원	
합계			2,150만원	

2012년도 상반기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실적

- 공익신고 지급 대상 기간 : '12. 1. 1. ~ '12. 6. 30.
- 공익신고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개최 : '12. 8. 29.(수)
- 2012년 상반기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내역

연번	건 명	주요 지적사항	보상금 지급액	비고
1	○○교 교사(축구감독)의 불법사항에 대한 학부모의 진정	○ 축구부 후원회 운영 및 축구부 기부금품 집행 부적정 ○ 활동비 부당 수령 및 명절 등 금품 수수	300만원	
2	○○교 세입사무(공금 횡령 및 유용) 비리	○ 수입금 개인용도 임의 사용(공금횡령 및 유용)	150만원	
3	○○교 세입사무(공금 횡령) 비리	○ 수입금 개인용도 임의사용(공금 횡령)	100만원	
합계			550만원	

2013년도 하반기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실적

- 공익신고 지급 대상 기간 : '12. 7. 1. ~ '12. 12. 31.
- 공익신고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개최 : '13. 3. 7.(목)
- 2012년 하반기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내역

연번	건 명	주요 지적사항	보상금 지급액	비고
1	○○부고 체육교사 (축구부 감독교사) 비리 민원	○ 직무관련 금품 및 향응 수수 ○ 학생 폭력·폭언 및 학생 간 폭력 묵과	500만원	
합계			500만원	

2014년도 하반기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실적

- 공익신고 지급 대상 기간 : 2013. 7. 1. ~ 2013. 12. 31.
- 공익신고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개최 : 2014. 3. 17.(월)
- 2013년 하반기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내역

연번	건 명	주요 지적사항	보상금 지급액	비고
1	○○학원(○○유 및 ○○초) 비리 고발	○유치원 교육과정(누리과정)내 영어교육 부당 실시 ○학교 근무자가 아닌 자에게 급여 부당 지급 ○학부모로부터 받은 발전기금 부당 사용	1,000만원	
합계			1,000만원	

2015년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실적

- 공익신고 지급 대상 기간 : 2014. 1. 1. ~ 2014. 12. 31.
- 공익신고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개최 : 2015. 3. 20.(금)
- 2014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내역

연번	건 명	주요 지적사항	보상금 지급액	비고
1	○○중 아이스하키 운동부 코치 금품수수	○학부모로부터 금품 수수 ○학교운동부 후원금 조성.집행 관리 부적정	180만원	
합계			180만원	

2016년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실적

- 공익신고 지급 대상 기간 : 2016. 1. 1. ~ 2016. 12. 31.
- 공익신고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개최 : 2016. 11. 25.(금)
- 2016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내역

연번	건 명	주요 지적사항	보상금 지급액	비고
1	○○학원 재단 비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교육과정 편성 업무 부당 처리 ○교과교실체 설계용역 예산 낭비 ○회계업무처리, 시설공사, 급식운영, 기간제 교원 채용업무 부적정 ○불법찬조금 및 촌지 예방지도 업무 소홀 ○행정실장 부당해임으로 법인회계 예산 낭비 	100만원	
2	○○○○중 운영 비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청소년단체 운영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적정 ○이사회 회의록 미공개 ○학교급식 위탁업체 선정 업무 부적정 ○조리종사원 성범죄경력 미조회 ○업무추진비,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○진로진학상담센터 조성공사 건축승인 미신고 	150만원	
합계			250만원	

2017년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실적

□ 공익신고 지급 대상 기간 : 2016. 7. 1. ~ 2017. 6. 30.

(이전 접수 기간 건 포함)

□ 공익신고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개최 : 2017. 12. 1.(금)

□ 2017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내역

연번	건 명	주요 지적사항	보상금 지급액	비고
1	○○학교 급식 비리	○학교급식 배송인원수 조작 ○학교급식 식자재 절도	2,000만원	
2	○○학교법인 비리	○학교직원 인건비 횡령 ○법인회계에서 개인소송비 집행 ○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	2,000만원	
3	○○학교회계 예산 무단 인출 등	○학교회계 자금 무단 집행 ○교원인사위원회 미운용	500만원	
4	○○학교 회계 비리	○학교직원 인건비 횡령	200만원	
5	○○학교 돌봄교실 운영 비리	○학교 돌봄교실 간식비 횡령	200만원	
6	○○학교법인 비리	○학교법인 이사장의 학사 개입 ○교원 신규채용 부적정 ○수학여행 계약 부적정	200만원	
7	○○학교 비리	○학교 회계질서 문란 ○교원 신규채용 부적정	100만원	
합계			5,200만원	

2018년도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실적(Ⅰ)

□ 공익제보 지급 대상 기간 : ~ 2017. 6. 30.

(이전 접수 기간 건 포함)

□ 공익제보위원회 개최 : 2018. 2. 21.(수)

□ 2018년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내역

연번	건 명	주요 지적사항	보상금 지급액	비고
1	○○학교 교원 채용 등	○2015 체육교과 교사 채용의 문제 ○전 이사장의 학사 관여 ○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	100만원	
합계			100만원	

2018년도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실적(III)

□ 공익제보 지급 대상 기간 : ~ 2018. 6. 30.

(이전 접수 기간 건 포함)

□ 공익제보위원회 개최 : 2018. 8. 30.(목)

□ 2018년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내역

연번	건 명	주요 지적사항	보상금 지급액	비고
1	○○학교 기관장 학사운영 부적정	○예비신입생 프로그램 방만 운영 ○점식허가 없이 출강하고 해당일에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 받음 ○학생들을 행사도우미로 동원, 교사에게 학 교차량 운행 지시 ○업무추진비, 학생 해외 연수비를 사적으로 사용	500만원	
2	○○학교 옥상 방수공사 감독 소홀	○학교 옥상 방수공사 시 불량자재를 사용하여 준공 3개월만에 박리현상(상부 벗겨짐 현상) 발생	200만원	
3	○○학교 교원 채용절차 부적정	○정교사 채용공고문에 원서 접수 마감일 (2017. 12. 29.)을 지나서 최종합격자 원서를 2018. 1. 2. 접수	200만원	
합계			900만원	